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20-0094484
(43) 공개일자 2020년08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50/26 (2012.01) G06Q 10/10 (2012.01)
G06Q 20/20 (2012.01) G06Q 40/00 (2006.01)
(52) CPC특허분류
G06Q 50/26 (2013.01)
G06Q 10/1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012023
(22) 출원일자 2019년01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1월30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로드시스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1123호(방이동, 잠실리시온)
(72) 발명자
장양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전영로324번길 23
(74) 대리인
성낙훈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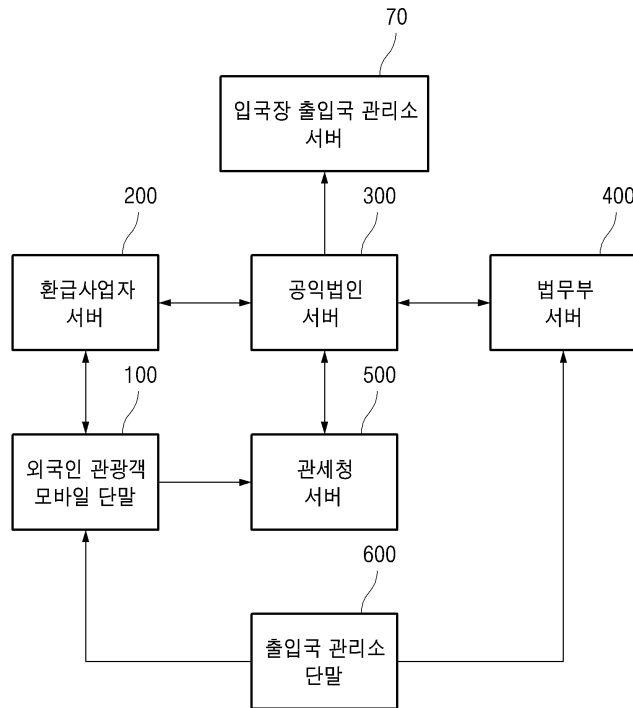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세금환급 목적의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정보를 법무부(정부) 산하 공익법인(예를 들어 한국이민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뒷면에 계속)

대표도 - 도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은, 환급사업자 서버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모바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관세청 서버에 구매 물품에 대해 반출을 확인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바일 여권이 저장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과,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로부터 세금환급을 신청받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고 출국확인 결과를 전달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자동 지급하는 환급사업자 서버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서버로서,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의 출국확인 요청에 대해 관세청 서버의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 세금환급 확인 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여 출국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52) CPC특허분류

G06Q 20/207 (2013.01)

G06Q 40/00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환급사업자 서버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모바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관세청 서버에 구매 물품에 대해 반출을 확인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바일 여권이 저장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로부터 세금환급을 신청받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고 출국확인 결과를 전달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자동 지급하는 환급사업자 서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서버로서,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의 출국확인 요청에 대해 관세청 서버의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 세금환급 확인 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여 출국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서버;

상기 공익법인 서버의 세금환급 확인 요청에 대해 세금환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관세청 서버; 및

상기 공익법인 서버의 외국인관광객 대한 출국확인 요청에 대해 출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법무부 서버;

를 포함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법무부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정보를 제공하는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액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 타국 입국장에서의 물품 검열 및 환급 취소에 대해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수속을 취소하여 국내 활동을 하다가 재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나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타국의 입국장 출입국관리소 서버에 출국 수속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여권은 여권번호, 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기일자, 시민권번호, 여권사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권정보를 실물 여권에서 인식하여 추출하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조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익법인 서버는 정부가 인정한 공익법인 또는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청구항 7

- (a)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서 환급사업자 서버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환급을 모바일로 신청하는 단계;
 - (b)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서 관세청 서버에 구매 물품의 반출을 확인하는 단계;
 - (c)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에서 공익법인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 (d) 상기 공익법인 서버에서 관세청 서버에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 관세청 서버에서 물품 반출확인으로 세금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세금환급 여부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단계;
 - (e) 상기 공익법인 서버에서 세금환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에 출국확인을 요청하고 법무부 서버에서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며 공익법인 서버에서 그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및
 - (f)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에서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하는 단계;
- 를 포함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 (g) 상기 (f)단계 이후에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 타국 입국장에서의 물품 검열 및 환급 취소에 대해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 (h) 상기 (g)단계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하여 국내 활동을 하다가 재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나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타국의 입국장 출입국관리소 서버에 출국 수속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방법.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세금환급 목적의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정보를 법무부(정부) 산하 공익법인(예를 들어 한국이민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최근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 지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외국의 백화점, 공항 터미널 등지에서 쇼핑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0003] 외국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나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상품(물품)을 사는 경우에, 상품에 붙는 세금 중 일정 부분을 다시 환급(tax refund)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0004]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전 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17,793(2018년 12월 기준) 판매장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이 출국수속을 끝낸 후, 출국장 면세구역 내에 있는 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0005] 이러한 외국인관광객의 종래 환급 절차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의 사후 면세점에서 일정액수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물품과 함께 환급전표(물품구매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물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구매물품을 제시하여 환급전표 반출을 확인한 다음 출국장 면세구역 내의 환급창구에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환급액을 수령하는 과정을 거친다.
- [0006] 이 환급 절차를 첨부된 도면 도 1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외국인관광객(10)은 국내의 사후 면세점(20)에서 일정액수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S1), 사후 면세점(20)은 환급사업자(30)에게 세금환급(tax refund)을 요청하고(S2) 환급사업자(30)는 관세청(40)에 세금환급을 등록하며(S3) 관세청(40)은 법무부(50)에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10)의 입국확인을 요청한다(S4).
- [0007] 이에 법무부(50)는 외국인관광객(10)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세청(40)에 통보하고(S5), 입국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40)은 세금환급을 등록하며 그 등록결과를 환급사업자(30)에게 통보하고 환급사업자(30)는 이를 사후 면세점(20)에 전달한다(S6).
- [0008] 다음 사후 면세점(20)은 환급을 위한 영수증(환급전표)을 외국인관광객(10)에게 제공하고(S7), 외국인관광객(10)은 출국시 환급사업자(30)에게 환급전표를 등록하고(S8) 관세청(40)에 반출확인 영수증을 제시한(S9) 다음, 출국 수속을 마친 후 출국장 환급창구(60)에 환급을 요청하면(S10) 출국장 환급창구(60)에서 외국인관광객(10)의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한다(S11).
- [0010]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의 환급 절차는 환급사업자가 법무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입출국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관세청을 통해 입국확인이 가능하나 출국확인이 불가능하여, 세금환급 고객의 출국확인을 위해 출국장에 환급창구를 설치하였다.
- [0011] 이에 따라 환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전자적(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나, 마지막 단계인 환급액 지급이 출국장의 환급창구 방문으로 오프라인화 되면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 [0012] 첫째, 환급사업자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여, 환급이 관세청에 신고는 되지만 실제 환급은 출국장에서만 가능하다.
- [0013] 둘째, 출국장에 소수의 환급사업자만 환급창구를 독점 설치하여, 민간사업자인 환급창구 설치업자의 기득권이 발생한다.
- [0014] 셋째, 환급사업자는 공항과 항만에 고객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해당 환급창구 설치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환급창구 미설치 업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한다.
- [0015] 넷째, 기존 환급사업자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신규 환급사업자의 세금환급 방해 등의 사례가 발행하고, 신규 환급사업자에게 전산연결의 시간 지연 및 고객의 비용 청구 등으로 신규 환급사업자는 공항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 [0016] 다섯째, 환급창구에 다수의 외국인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 급증으로 환급 포기, 거절 영수증으로 직원의 부정 수급 또는 항공기의 출발 지연이 발생한다.
- [0017]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장 환급창구에서 환급액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여러 핑계를 대어 출국 수속을 취소한 후, 국내에 들어와 사후면세점과 짜고 물품 구매를 취소하고 이 취소 사실을 미신고하여 사후면세점과 외국인관광객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 [0018] (특허문헌 0001)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1426520호(2014.08.05.)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9] 본 발명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내국세를 감면해주는 세금환급에서 최종적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확인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기업인 환급사업자에 의해 주도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공익목적 법인(예를 들어 한국이민재단)이 환급사업자에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020]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한 후 재출국하는 경우 입국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출국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 환급받은 물품을 특별히 검열케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21]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시스템은, 환급사업자 서버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모바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관세청 서버에 구매 물품에 대해 반출을 확인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바일 여권이 저장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

[0022]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로부터 세금환급을 신청받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고 출국확인 결과를 전달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액을 자동 지급하는 환급사업자 서버;

[0023]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서버로서,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의 출국확인 요청에 대해 관세청 서버의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 세금환급 확인 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여 출국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서버;

[0024] 상기 공익법인 서버의 세금환급 확인 요청에 대해 세금환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관세청 서버; 및

[0025] 상기 공익법인 서버의 외국인관광객 대한 출국확인 요청에 대해 출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법무부 서버;

[0026]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28] 또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법무부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정보를 제공하는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0] 또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액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 타국 입국장에서의 물품 검열 및 환급 취소에 대해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2] 또한, 상기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수속을 취소하여 국내 활동을 하다가 재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나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타국의 입국장 출입국관리소 서버에 출국 수속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4] 또한, 상기 모바일 여권은 여권번호, 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기일자, 시민권번호, 여권사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권정보를 실물 여권에서 인식하여 추출하고 정보를 암호화하여 재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6] 그리고 상기 공익법인 서버는 법무부(정부)가 인정한 공익단체 또는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8]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방법은, (a)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서 환급사업자 서버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환급을 모바일로 신청하는 단계;

- [0039] (b)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서 관세청 서버에 구매 물품의 반출을 확인하는 단계;
- [0040] (c)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에서 공익법인 서버에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출국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 [0041] (d) 상기 공익법인 서버에서 관세청 서버에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 관세청 서버에서 물품 반출확인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세금환급 여부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는 단계;
- [0042] (e) 상기 공익법인 서버에서 세금환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에 출국확인을 요청하고 법무부 서버에서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에 통보하며 공익법인 서버에서 그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및
- [0043] (f)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에서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 하는 단계;
- [0044]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46] 또한, (g) 상기 (f)단계 이후에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에 타국 입국장에서의 물품 검열 및 환급 취소에 대해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8] 그리고 (h) 상기 (g)단계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하여 국내 활동을 하다가 재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나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에서 타국의 입국장 출입국관리소 서버에 출국 수속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49] 상술한 과제의 해결 수단에 의하면, 공익목적 법인(예를 들어 한국이민재단)이 환급사업자에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세금환급 제도의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고, 모든 환급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항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을 증가할 수 있다.

[0050] 또한,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취소한 후 다시 출국하는 경우 입국장의 출입국 관리소에 출국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 환급받은 물품을 특별히 검열케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51] 도 1은 종래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세금환급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세금환급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 도 4는 도 3에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의 순서도이다.
- 도 5는 본 발명의 세금환급시 적용되는 모바일 여권의 예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52]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 [0053]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 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0054] 하기에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 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 [0055]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0057]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세금환급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세금환급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 [0058]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세금환급시스템은,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 환급사업자 서버(200), 공익법인 서버(300), 법무부 서버(400), 관세청 서버(500) 및 출입장 출입국관리소 단말(6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 [0059] 여기에 대해 출입장 출입국관리소 서버(7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 [0060]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은 외국인관광객이 소지하고 다니는 무선단말로서, 도 5에 나타낸 모바일 여권(1)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 [0061] 상기 모바일 여권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를 통해 실물 여권을 촬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QR코드화 하거나 이미지 정보를 암호화한 것으로,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에 디스플레이되거나 외국인관광객의 여권 인증을 요청한 서버나 단말에 디스플레이된다.
- [0062] 이때, 모바일 여권(1)은, 여권번호, 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기일자, 시민권번호, 여권사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권정보를 실물 여권에서 인식하여 추출하고 정보를 암호화하여 재조합한다.
- [0063] 구체적으로 모바일 여권(1)은,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가 및 여권사진의 HASH값을 AES128-CBC 암호화하여 생성한 QR 코드(11)와, 추출된 여권사진을 표기하는 사진표기부(2)와; 추출된 국가를 문자 또는 이미지로 표기하는 국가표기부(3)와; 추출된 여권번호에 대응하여 생성된 간편인증번호(41)를 표기하는 간편인증코드부(4)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실물 여권 없이 전자화된 코드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0064] 이때, 상기 모바일 여권(1)은 스마트폰 등의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의 화면에 변환되어 표시되거나, QR코드화로 출력되어 사용될 수 있다.
- [0065] 예를 들어, 종이 스티커에 출력하여 소지하거나 손목밴드 형식으로 출력하여 소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여 읽는 것만으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0066] 또한, 모바일 여권(1) 생성시 대응되는 쿠폰번호가 함께 발행되어 정보 안에 포함되어 저장된다.
- [0067] 발행된 쿠폰번호는 모바일 여권 소지자(외국인관광객)의 물품 구매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0068] 바람직하게, 상기 모바일 여권(1)은 여권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모바일 여권 생성시 인증 생성된다.
- [0069] 외국인관광객은 국내의 사후면세점에서 일정액수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에 디스플레이되는 모바일 여권(1)을 제시하여 그 구매물품과 함께 환급전표(영수증)를 교부하여 등록한다(S302).
- [0070] 또한, 물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시 출입장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 수속을 진행하고 세관직원에게 구매 물품을 제시하여 물품 반출 신고 절차를 수행한다(S304).
- [0071] 이때 출입장 출입국관리소 단말(600)에서 법무부 서버(400)에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정보를 제공한다.
- [0072] 이후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을 통해 환급사업자 서버(200)에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환급을 모바일로 신청한다(S306).
- [0073] 이때 환급사업자 서버(200)에 모바일 여권과 환급전표(영수증)를 제시함은 물론이다.
- [0074] 또한,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을 통해 관세청 서버(500)에 상기 S304 단계에서의 구매 물품의 반출을 확인한다(S308).
- [0075] 상기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로부터 세금환급을 요청받은 환급사업자 서버(200)는 법무부에서 인정한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는 서버(300)에 출국확인을 요청한다(S310).
- [0076] 상기 법무부가 인정한 공익법인은 예를 들어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이민재단이다.
- [0077] 상기 공익법인 서버(300)는 관세청 서버(500)에 세금환급 확인을 요청하고(S312), 관세청 서버(500)는 상기 물품 반출확인으로 세금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세금환급 여부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300)에 통보한다(S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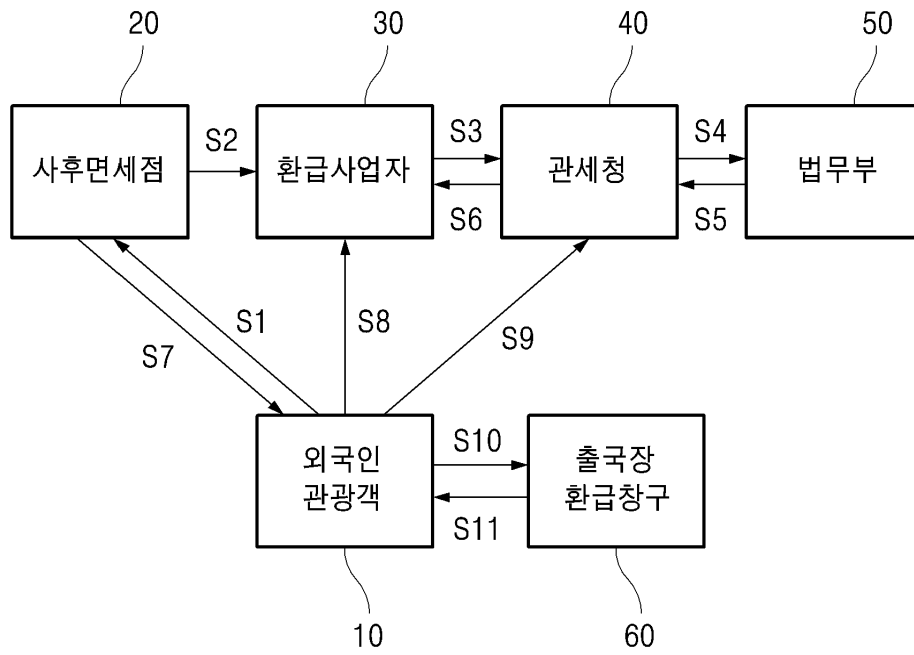
- [0078] 상기 공익법인 서버(300)는 세금환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법무부 서버(400)에 출국확인을 요청하고(S316), 법무부 서버(400)는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공익법인 서버(300)에 통보하며(S318), 공익법인 서버(300)는 그 출국 여부 확인 결과를 환급사업자 서버(200)에 전달한다(S320).
- [0079] 상기 환급사업자 서버(200)는 세금환급을 모바일로 신청한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계좌로 환급액을 자동으로 지급한다(S322).
- [0080] 여기서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금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0081] 또한, 상기 S316단계에서 세금환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서버(300)는 법무부 서버(400)에 출국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세금환급이 확인되지 않음을 환급사업자 서버(200)에 통보하여 이 역시 세금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0083] 이와 같이 공익법인(예를 들어 한국이민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 등의 기관)에서 세금환급을 위해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에 한해서 환급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출국정보를 제공하여, 물품 반출확인만으로 세금환급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고, 외국인관광객은 모바일을 통해 출국장에서 환급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급사업자는 출국확인 즉시 모바일로 환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
- [0084]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장에서 환급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공항 혼잡이 없어지고, 여유있게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다.
- [0086] 한편, 상기 S322단계를 통해 세금환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출국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0087]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수속 취소 절차를 밟는(S402) 경우,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600)은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100)에 추후 타국의 입국장에서 물품 검열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세금환급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한다(S404).
- [0088] 또한, 출국 수속을 취소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여행)하다가 다시 재출국 수속을 밟는 경우 공익법인 서버(300) 또는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600)은 외국인관광객이 입국할 타국 입국장의 출입국관리소 서버(70)에 출국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S406) 세금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검열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 [0089]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국인관광객이 타국 입국장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수속을 밟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은 물품을 검열하고(S408), 그 물품이 없는 경우 환급을 취소한다(S410).
- [0091]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0092] 또한,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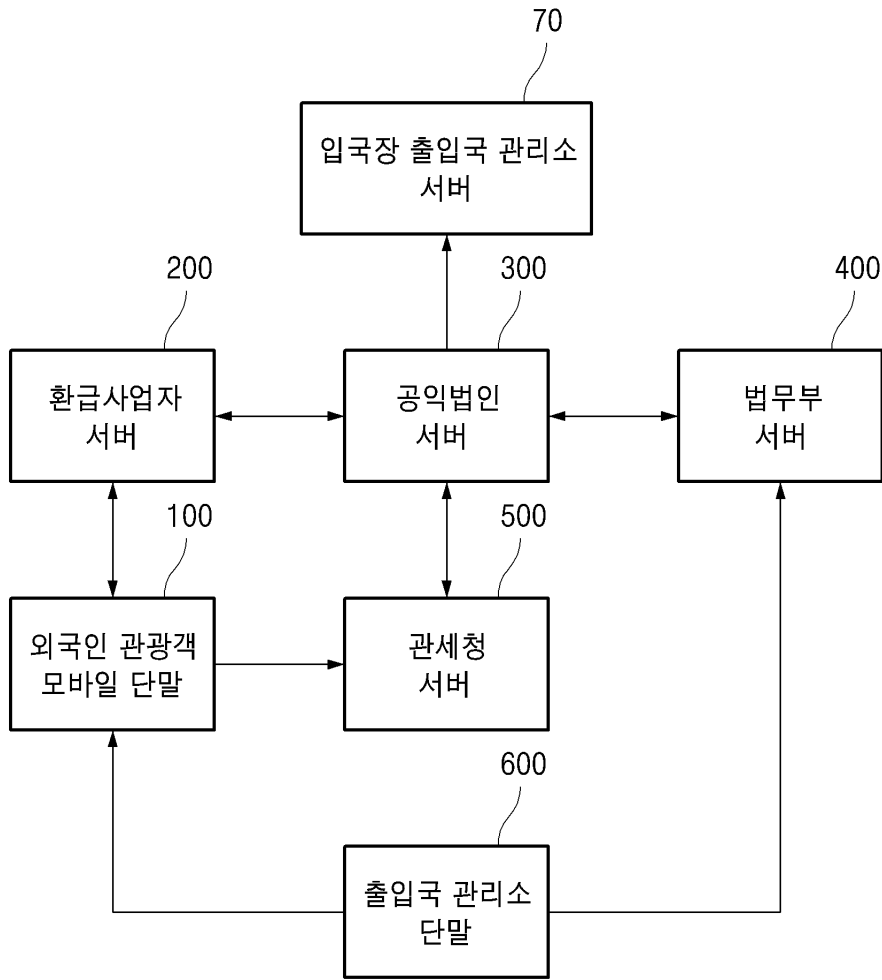
- [0093] 1: 모바일 여권 70: 입국장 출입국관리소 서버
- 100: 외국인관광객 모바일단말 200: 환급사업자 서버
- 300: 공익법인 서버 400: 법무부 서버
- 500: 관세청 서버 600: 출국장 출입국관리소 단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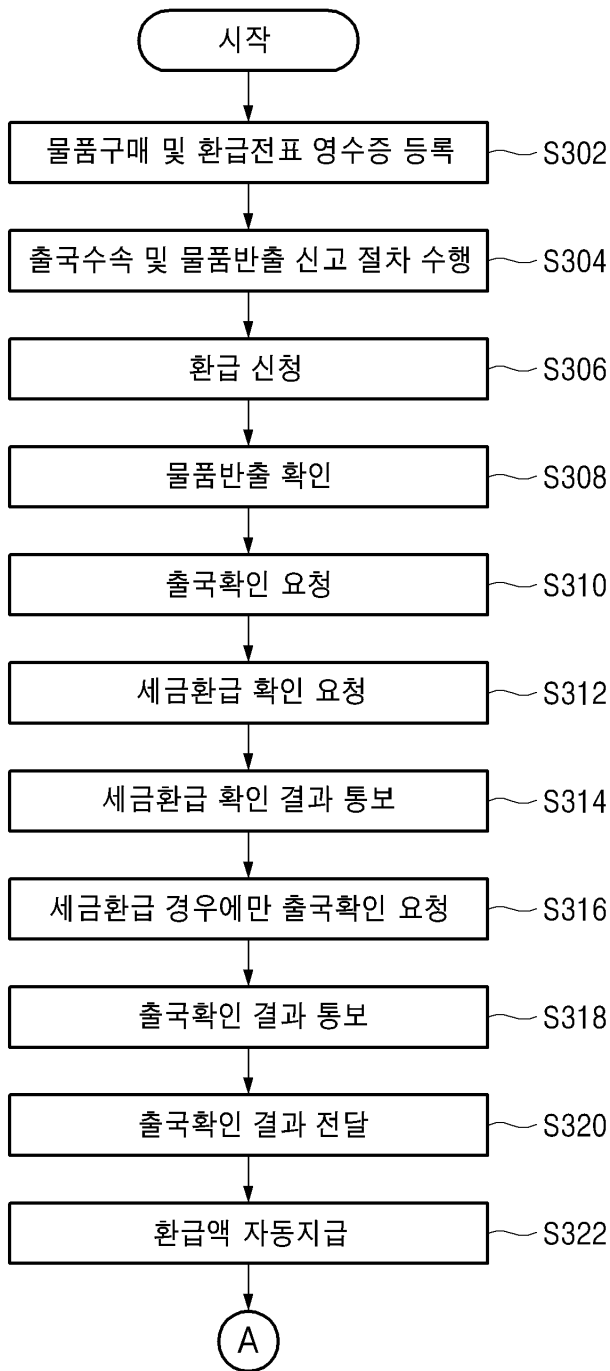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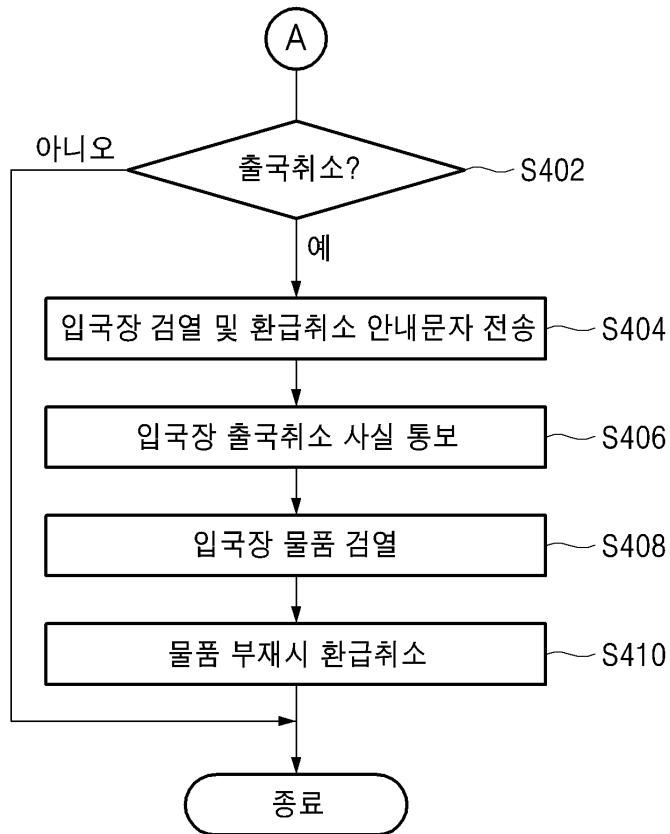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